

-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-

업 무 협 약 서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중소기업은행은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중소기업은행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이 상호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(이하 “콘텐츠 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공동으로 지원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추가 되는 “콘텐츠 중소기업”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업무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- 가. 양 기관이 상호 추천한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력
- 나.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코리아랩 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, 중소기업은행은 홍보관, 협력센터 등을 구축 운영
- 다. 콘텐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교육, 전문컨설팅 및 판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

제3조 (협약서의 이행) 양 기관은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의견과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며, 세부적인 사항은 양 기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.

제4조 (협약의 효력 및 기간) ① 본 협약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, 중소기업은행장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
② 본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서면으로 된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제5조 (비밀유지) 양 기관은 협약서의 조건과 항목에 대하여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. 단,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나 법률 등에 의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6조 (협약의 변경) 협약내용의 변경사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 (기타사항)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2월 12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원장 송성각



중소기업은행
은행장 권선주


